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46

발의연월일: 2021. 3. 25.

발 의 자:이헌승·김정재·김도읍

이양수 · 조해진 · 성일종

이주환 · 김성원 · 서병수

하영제 · 김미애 · 정점식

추경호 · 강민국 · 임이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보험회사가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'사고부담금' 제도를 운영 중이며, 음주운전·무면허 운전·뺑소니 사고가 그 대상 임.

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큰 인적·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「도로교통법」,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에서는 이미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음주운전과 같이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서도 '사고부담금' 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유발 시보다 강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도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2호 중 "운행하다가"를 "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행하다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보험금등의 지급 등) ①	제29조(보험금등의 지급 등) ① 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	
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	
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	
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	
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	
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	
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	
하는 금액을 구상(求償)할 수	
있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	2
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	
에서 자동차를 <u>운행하다가</u> 일	<u>운행하거나 같은</u>
으킨 사고	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
	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
	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
	<u>서 운행하다가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